

인터넷 실명제 쟁점

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 여 라



요 약

-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형성된 인터넷 여론 및 오프라인에서의 촛불시위로의 확산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열하고 있음
 -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전제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기존의 매체를 통해 쟁점화 된 사안을 토론을 통해 확대하거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기도 함
 - 그러나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은 때로는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의 사이버 역기능을 초래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입히기도 함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대신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 한편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전문가, 인터넷 사업자, 네티즌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임
 - 사이버 폭력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음

-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에는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목 차

1. 문제제기	1
1) 인터넷 매체의 특성	1
2) 인터넷 여론의 특성	2
2.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요 쟁점	4
1) 인터넷 실명제 개념에 대한 논의	4
2)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5
3)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역기능 방지	6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8
1) 개념 및 도입 현황	8
2) 관련 법령	10
3)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10
4. 주요국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12
1) 주요국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 현황	12
2) 주요국의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정책	12
5. 인터넷 실명제 대안	14
<참고문헌>	16

1. 문제제기

인터넷 매체의 출현과 발전으로 여론 형성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때로는 특정한 의도를 통해 조작되어 인터넷 이용자 및 국민을 선동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일부러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사이버 상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게시판에 특정 대상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비난하기도 하며,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기도 하는 것이다(강미은, 2001). 즉,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댓글로 인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사례를 보면,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슈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되었고 오프라인에서의 촛불시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게시판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id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담보로 한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 정부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자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봄으로써 인터넷 여론 확산과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1)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익명의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는 여러 가지 동기(motivation)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needs)를 충족하게 된다. 즉 인터넷 이용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information seeking),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social relation seeking),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psychological seeking), 인터넷 बैं킹 및 인터넷 쇼핑 등과 같은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생활에서 힘들었던 생각이나 고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사이버공간인 블로그(blog)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들은 인터넷

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같은 관심사를 지닌 이용자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와 같은 새로운 토론 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일종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표출과 여론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및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들이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오는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과 정보의 신뢰성 문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2) 인터넷 여론의 특성

가. 인터넷 여론 형성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은 신문,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에서 쟁점화 된 사안이 인터넷에서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쟁점이 먼저 가시화되어 이를 기존의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사안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여론은 MBC 'PD수첩'의 보도로 쟁점화 된 이슈가 인터넷에서 확대되어 오프라인에서의 촛불시위로까지 연결된 사례이다. 인터넷에서 먼저 여론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먼저 쟁점이 되었든 지에 상관없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여론의 형성과 확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인이용자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결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 외에 일반 네티즌을 통해서도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세대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맺어지는 면대면 의사소통(face to face communication) 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즐겨 만드는 요리를 블로그를 통해 올리면 많게는 하루 몇 백 건 이상의 방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명한 블로거들은 방문자들과 서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정치적이지 않은 일반인의 의견 교환의 장은 때로는 사회적 이슈 및 관심사와 맞물려 오프라인에서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한 유모차 부대 시위 또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맺어진 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장

인터넷 여론은 특히 사회적으로 의견 표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 집단의 의견 표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나 젊은이,

또는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주부의 경우 인터넷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된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정부나 정치인과 같은 거대 권력 집단을 향해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기도 하며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형성된 여론은 쉽게 확산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소멸되기도 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쉽게 여론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집단에 의하여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잠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또는 또 다른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여론이 대두될 경우에는 기존의 여론은 쉽게 분산되고 잊혀지게 된다.

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역기능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한 인터넷 여론 형성의 경우 이용자들은 의견이 빠르고 쉽게 개진되는 만큼 다른 이용자들의 동조적 의견이나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의식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동조 받지 못하는 의견일 경우 소외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하게 되며, 소위 말하는 주류 의견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더라도 여론의 파도에 휩쓸려 자신이 극보수로 낙인찍히거나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의 결과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여론은 주제에 따라 상이한 확산의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시작되어 확산되는 다양한 여론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비판 등은 쉽게 현실세계로 개입되어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반면 정부나 정치인들과 같은 기성 권력 집단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여론 조성 움직임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실성을 의심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조작도 쉬운 반면 그 검증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매일 24시간 감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어떤 발언에 대하여 그 진위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쉬워진 이유도 있다. 반면 사안의 진위와 관계없이 허위로 조작·날조되어 유포된 정보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유통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생각보다 큰 결과를 낳기도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요 쟁점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전문가, 인터넷 사업자, 네티즌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여론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인터넷 사이트카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인터넷 역기능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20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반면 전문가 및 네티즌들은 “정부가 과거 불온서적을 검열하듯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든다”고 인식하고 있고, 인터넷 업계는 “규제가 많아지면 이용자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논의는 크게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모호’,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그리고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 역기능 방지’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1) 인터넷 실명제 개념에 대한 논의

인터넷 실명제는 회원가입 시 실명을 확인하는 ‘본인확인 실명제’와 게시물에 실명을 노출하는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인확인 실명제’의 경우 현재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네티즌 중 상당수가 이미 실명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과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게시물에 실명을 노출하는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는 모든 게시물과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선일보닷컴의 경우 기사 댓글에 실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와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로 나눌 수 있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 또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각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익명/실명 게시판을 선택하거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자율성에 맡길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근간의 인터넷 실명제 논의는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단순한 찬반론만 무성한 상황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이에 기초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가격 등락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하는 사이트카 개념을 인터넷에 도입한 개념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특정 이슈에 대한 댓글이나 조회수가 급증할 경우 이를 골라내 대응하겠다는 것. 연합뉴스 2008. 6. 16일자 온라인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30713>

2)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중심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인터넷상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상반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는 가치와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간의 조화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이재진, 2003). 즉 비록 언론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개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조화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인격권 간의 관계보다 더 이루어지기 힘든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기존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법률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쟁점들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불평등한 권력관계(교수와 학생, 고용주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등)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해진 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인터넷은 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인 권리로 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재진, 2003).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의 게시판은 다른 게시판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원칙적으로 더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어떠한 익명의 고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적인 선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자정운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제도 자체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으며 특히 공공기관 게시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홍완식, 2006).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며, 욕설이나 잘못된 언어 등 무례한 언어사용 방지로 국어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익명으로 게시되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글들은 피해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인터넷 규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

이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인격권의 침해는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인 '네카시즘'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판 마녀사냥이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정완, 2006) 네티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역기능 방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인터넷상의 표현은 이러한 익명성을 전제로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반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각종 사이버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은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자격을 부여하며 솔직한 표현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은 이를 작성한 이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아닌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게 하며 개인이 보다 평등하고 참여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을 무시하고 실명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오히려 익명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풍부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도 진정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이미 인터넷 내의 모든 이용 행위(사이트 접속, 이동, 파일 업로드, 채팅 등)가 현재도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개인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이버 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대부분의 서버에 남겨진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없이도 사이버 범죄 및 폭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현실이다(오병일, 2005).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 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역기능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순수 실명제로 이용되는 싸이월드의 경우 희생자의 블로그가 노출되어 '인터넷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소지도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이한 이름을 가졌거나 잘 알려진 인물(공인이나 연예인)일 경우 실명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미국의 판례를 보면, 미 연방대법원은 1995년 맥킨타이어 대 오하이오 선거관리위원회 사건(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에서 "익명성은 악의적(pernicious)이라기 보다는 옹호(advocacy)와 이견(dissent)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간주하였다(이재진, 2003). 맥킨타이어 부인이 익명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비판의 글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선거기간 중에 배포한 것에 대하여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의 결정은 수정헌법에 의하여 보

호받을 수 있는 언론자유 의 한 측면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익명적 글쓰기는 각종 사이버 역기능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의 정보유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44조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익명성에 기초한 글쓰기 등은 사회적 규범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무절제한 의견을 내놓아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신뢰성을 저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인터넷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익명성에 기반하여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익명성은 각종 사이버 역기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서 일반인에게로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등의 사례로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며(정완, 2006) 각종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이버 폭력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오병일, 2005) 주장은 사이버 상의 정보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허위 정보가 일단 유포되면 주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게시할 때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올리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의 조사²⁾에 의하면, 실명 토론방이 익명 토론방보다 언어의 폭력성이 낮고, 문법적 오류가 적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한 메시지의 비중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또한 인터넷상의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홍완식, 2006), 더욱이 익명으로 인한 욕설과 비방,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저질 인터넷 문화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조선닷컴의 ‘천자토론’, 다음의 ‘아고라’, 파란닷컴의 ‘리플토론’을 대상으로 언어의 폭력성(욕설, 속어, 비방 및 비하), 감정적·이성적 댓글, 문법성, 메시지의 심사숙고(응답에 대한 신중함), 참여 다양성을 조사함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양립한 가운데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게시판³⁾ 게시물 및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5월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였고, 본인확인제 효과 분석 및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확산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⁴⁾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및 게시판 변화 등에 따른 제도보완·개선’,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정책 현황 연구’, ‘효과적인 본인확인정보 관리 및 본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검토’, ‘해외 주요국의 사례연구’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개념 및 도입 현황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대신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개별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회의 본인확인으로 이용가능하며,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의 경우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게시물을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등 사업자나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본격적인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3월부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연구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 포털 중심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본인확인 수단은 실명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i-PIN⁵⁾,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⁶⁾

3) ‘본인확인제’에서의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2008.6.19)

〈선거에서의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 확인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p>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p>	<p>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p> <p>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p> <p>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p>
--	---

- 5)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주민번호대체수단으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상 개인 식별 번호임
- 6)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2008.6.19)

2) 관련 법령

본인 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p>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를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6.13]</p>
<p>영 제29조 본인확인조치</p>	<p>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3)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월 2008년도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사업자를 공시하였고 지난 4월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계속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일일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 언론

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20만 명 이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8월 8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3호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영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p>	<p>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p> <p>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p> <p>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	--

2008년 현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사업자 6개이다.

<2008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포털(16개)	인터넷 언론(15개)	UCC(6개)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세이클럽, 하나포스, 프리첼, 드림위즈, 버디버디, 천리안, MSN, 코리아닷컴, 메가패스	조인스, 조선일보, iMBC, KBS, SBS,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국아이닷컴,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투데이, 한국경제, 데일리서프라이즈, 경향닷컴, 한겨레신문	판도라TV, 티스토리, 디씨인사이드, 엠엔케스트, 이글루스, 엠군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7)

4. 주요국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1) 주요국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 현황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비영리 뉴스그룹(인터넷 카페의 초기 모델) 등을 통해 주로 학술적 목적의 인터넷 토론문화가 있어왔으며 최근 유튜브, 구글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게시판에서 댓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 시 게시판 기능이 필수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게시판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글쓰기를 허용하는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글쓰기와 댓글 달기가 우리나라처럼 대중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⁷⁾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도 각 기사에 댓글 달기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보다는 사설 등의 기사에 국한하여 제한적인 글쓰기가 허용되고 있다.

<해외 인터넷 게시판·댓글 서비스 사례>

해외 게시판·댓글 서비스	내 용
google groups	카페의 형태를 띄고 있는 구글 그룹스는 '08.06.04 현재 10,003개가 개설 되어 있음
google news	'comments by people in the news'를 통해 뉴스 관련자 및 전문가 등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yahoo.com	yahoo answers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용자들이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You Tube	동영상을 게시할 때 게시판 기능 제공
yahoo.co.jp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서비스 제공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2) 주요국의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정책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 교육 네트워크에서 실명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PC방 이용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⁸⁾ 또한 중국 광둥주 교육부는 관내 모든 대학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게시판에 접근 시 실명 및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

7)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2008.6.19)

8) 국회도서관 중국 해외자료관 제공 자료 (2008. 7)

년부터는 블로그의 실명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온라인에서의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인정하는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황용석, 2007). 물론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사전에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1996년 조지아 주에서 추진한 ‘인터넷 사찰법(Internet Police Law: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고, 2001년 뉴저지 항소법원은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야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 사례(Dendrite International v.Does)가 있다. 2003년에는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그 모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미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글이 위협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익명의 게시자는 미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규제보다는 보편적인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과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처하는 등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EU 회원국 간의 상이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EU SIP(Safe Internet Plus) 2005-2008은 핫라인, 필터링, 대중교육 부문을 지원하고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일반대중 및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U SIP(Safe Internet Plus) 2005-2008 4대 주요 실행계획〉

주요 실행 계획	세부 내용
불법 콘텐츠 대처	핫라인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신고를 지원하고, EU는 회원국별 인터넷 핫라인의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INHOPE) 및 개별 핫라인 운영에 지속적인 기금 지원
유해 콘텐츠 처리	인터넷 이용자가 원치 않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개발 후원 및 EU 회원 국가간 관련 정보 교류 촉진 지원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변화 및 초국경적인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규제방식을 지원 - EU는 국가간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 플랫폼인 Safe Internet Forum을 제공
인식제고 활동 수행	EU는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교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터넷의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활용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인터넷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이용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의 인터넷 정책은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또한 익명성은 오로지 최초로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때에만 침해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은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5. 인터넷 실명제 대안

결국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다. 즉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운동이나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의 네티즌 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따라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앞에서 논의한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와 방식, 그리고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범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면서 관련 사이버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이미 일반인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터넷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비교적 새로운 매체로 그 특성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터넷의 특성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넷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 필요하며, 매체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인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 및 개인정보 노출, 각종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 범죄의 영향력 등에 관한 인지 없이 행해지는 비행(misdemeanor)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인 교육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이버 상에서의 인권침해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신고 및 접수 절차 등이 번거롭지 않고,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취해질 때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의 정책적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에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걸러내서 알려주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익명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네티즌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과 네티즌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으로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은 (2001),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나남출판
- 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인터넷 토론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UMedia Journal』,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 오병일 (2005), 『인터넷 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2005. 8. 26
- 이재진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한·미 간의 판례 고찰을 중심으로”,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정 완 (2006),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9
- 최소영 (2005), 『인터넷 실명제 민·당·정 간담회』 2005. 8. 26
- 황용석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17대 대선의 쟁점들』, 한국학술연구원 제8차 코리아 포럼 및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년 춘계 쟁점 세미나
- 홍완식 (2006),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2008.6.19)
- 연합뉴스 2008. 6. 16일자 온라인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30713>